

##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

### 1.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해당 순환자원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관한 정보(사업장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 2)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순환자원의 종류
- 3)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개시일
- 4)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계획량
- 5)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다목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준수사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다목에 따른 정보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1. 품목별 준수사항

### 가. 폐지류

#### 1)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이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라 한다) 중 폐종이류(51-28-02) 또는 폐지류(91-04-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이팩은 제외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이하 "재활용유형"이라 한다) 중 R-4-3(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수동 또는 자동 압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폐신문지의 경우 압축을 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SPS-KPRA 1501 -6237 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재활용제지 원료의 종류별(폐골판지(OCC), 폐신문지(ONP), 폐백상지(WL) 등)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나. 고철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고철(51-29-01)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수동 또는 자동 절단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D 2101(주철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또는 압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용 강스크랩의 경우 절단 또는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고철은 한국산업표준 KSD 2101에 따른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다. 폐금속캔류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금속캔류(51-29-03)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  
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  
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폐금속캔류는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라.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알루미늄(Al)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마. 비철금속 중 구리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구리(Cu)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바.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51-41-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2-1(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2)의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3)의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의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자원 이력 관리대장에 순환자원의 발생 및 공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마

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의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른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의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색상별로 선별한 후, 파쇄·분쇄시설(수동 또는 자동 파쇄·분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

분쇄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파쇄·분쇄에 사용된 파쇄·분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아. 폐식용유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식용유(51-16-00 또는 91-03-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3-3(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중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의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이용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기준에 적합한 원료물질로의 제조에 사용된 분리·증류·추출·여과 등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자. 커피찌꺼기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커피찌꺼기(51-17-2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R-2-2(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3) R-4-5(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4) R-4-7(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5) R-4-8(동·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6) R-5-1(「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7) R-5-2(「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8) R-5-3(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 (9) R-5-4(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 (10) R-11-2(「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의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이용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선별·탈수·건조·혼합 등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에 넣거나 포장·보관하여야 한다.

### 차. 왕겨 및 쌀겨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왕겨 및 쌀겨(51-19-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R-1-2(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3) R-4-5(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4) R-5-1(「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5) R-5-2(「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6) R-5-3(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 (7) R-5-4(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 (8) R-11-2(「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 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를 한자(「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도정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 미만 시설도 포함한다)로서 미곡을 현미 또는 백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및 쌀겨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왕겨와 쌀겨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에 넣거나 포장 보관하여야 한다.

## 카. 폐석재

###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석재(51-14-0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절단시설(수동 또는 자동 절단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에 사용된 절단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타.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합성수지(51-03-01)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아이씨트레이(IC-Tray)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4(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여야 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갖춘 자